

경우에는 工事費가 50萬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定額工事費로 할 경우에 51坪 정도가 増築을 하게 되면 오히려 49坪 보다 더 19萬 4,000원이 쓴 30萬 6,000원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한 實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市長에 의해서 모든 増築建物에서 工事費 負擔을 定額工事費로 통일해서 施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提出된 內容입니다.

또한 給水條例 第8條第1項의 計劃給水地域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서울市界內의 給水可能한 모든 地域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定額工事費制度가 마치 어느 특수한 計劃地域을 對象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給水區域이라는 用語로 통일시킴으로써 市民들이 쉽게 理解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第10條의 제목 중 用語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定額制工事費를 定額工事費로 用語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第10條의 내용 중 定額工事費와 定額給水工事를 실시하는 地域 및 特定地域은 市長이 決定告示하고 있는데 條例上에는 市長이 告示한다로 規定되어 있어서 이를 市長이 決定告示한다로 用語를 改正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일부의 用語 整理 등 條例內容을 일부 改正해서 市民들의 理解를 도모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事項입니다.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本案件을 處理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根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奉萬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本部長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檢討報告書 2페이지 檢討意見을 중심으

로 報告하겠습니다.

(報告)

4. 검토의견

가. 개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정액 공사비를 적용하는 지역에 대한 정액공사비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막고, 수도공사로 인하여 급수관 구경확대할 경우, 증축면적(165m<sup>2</sup> 미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와 정액공사비로 이원화 적용하고 있어서, 정액공사비의 인상억제로 실제공사비를 적용받는 증축면적이 적은 건물이 오히려,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공사비 이원화)

165m<sup>2</sup> 미만 - 실비정산

165m<sup>2</sup> 이상 - 정액제 징수

나. 조항별 분석

(1) 급수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중 “계획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급수조례 제8조①항에 계획급수지역내에서의 공사비는 제10조 규정에 고시하는 세대당, 또는 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이하 “정액공사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급수조례 제10조(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의 고시)에 의하면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시장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어, 급수조례 제8조①항과 급수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액급수공사 실시지역이 계획급수지역과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액제 실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8조①항에서 “계획급수지역내”로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조례 해석상 정액공사 실시지역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오해소지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수조례 3조(급수지역) ①항에 급수구역을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는 급수구역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급수구역으로 통일할 경우, 정액공사비 실시지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금번 정액공사비의 실시지역과 관련한 용어를 계획급수지역에서 급수구역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지역고시의 사례

i) 서울특별시 고시 제290호(81.8.10.)에서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지역과 정액제 공사비를 고시 하였음.

서울시는 급수관의 길이에 따라 시설비를 받고 있던 실비정산제가 81.8.10. 이전 실시의 수도공사. 일부업체의 부당요금 요구사태 증가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고, 공사비가 각각 달라서 수도수용가의 의구심 증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액제로 주택은 가구당 29만원, 일반건물은 건물 평당 m당 1,800원씩 받고, 주택의 경우 건평이 50평 이상인 경우, 일반주택 공사비를 적용하고, 공사비가 일반주택 공사비 29만의 150%인 43만 5,000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만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45만원의 수도공사비가 소요된 수요자는 기본 정액공사비 29만원과 공사비의 1.5배인 43만 5,000원의 초과분, 1만 5,000원을 합한 30만 5,000원을 내야하고, 10평 미만의 서민주택은 공사비 29만원의 30%를 감면하고 6개월 분납제를 실시하여, 서민부담 감소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시설비 정액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당시 소위 특선을 끌어준다고 터무니 없는 공사비를 요구한 부실업

자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시에서는 예상되는 고정수입원 확보가 분명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거나, 간선 배수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정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시설비를 내야하고, 간선 배급수관에서 먼 거리에 있거나, 포장도로변에 있는 가정은 종전보다 싼 값으로 수도공사를한다 해서,

.....  
油印物 5페이지와 같은 實施 告示를 81年 8月 10日 朴英秀 市長이 해서 이 條項은 그대로 施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油印物 6페이지 서울特別市 告示 第65號로 85年 1月 28日 두번째 告示가 있습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給水工事 定額工事費와 定額給水工事 實施地域을 告示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油印物 7페이지

.....  
(3) 제8조 제2항 중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을 제외 한 증축면적이 165m<sup>2</sup>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구경확대 공사를 제외한다” 삭제한다는 개정안은

i) 급수조례 제8조②항의 실제 소요공사비의 적용공사의 예외규정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은 제외한 증축 연면적의 165m<sup>2</sup> 이상인 건물의 구경확대 공사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서 구경확대 경우, 건물의 규모에 따라, 증축면적이 적은 경우는 실제 소요 공사비를 증축면적이 큰 건물은 정액공사비로 이원화 적용되고 있으며,

ii) 구경확대 공사비가 실제공사비와 정액공사비로 운영을 하다보니, 그간 정액급수 공사비는 81.8월이 정액공사비 실시이후, 13년동안 한번도 공사비를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수조례 3조(급수지역) ①항에 급수구역을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는 급수구역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급수구역으로 통일할 경우, 정액공사비 실시지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급수구역의 정액공사비의 실시지역과 관련한 용어를 계획급수지역에서 급수구역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지역고시의 사례

i) 서울특별시 고시 제290호(81.8.10.)에서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지역과 정액제 공사비를 고시 하였음.

서울시는 급수관의 길이에 따라 시설비를 받고 있던 실비정산제가 81.8.10. 이전 실시의 수도공사. 일부업체의 부당요금 요구사태 증가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고, 공사비가 각각 달라서 수도수용가의 의구심 증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액제로 주택은 가구당 29만원, 일반건물은 건물 평당 m당 1,800원씩 받고, 주택의 경우 건평이 50평 이상인 경우, 일반주택 공사비를 적용하고, 공사비가 일반주택 공사비 29만의 150%인 43만 5,000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만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45만원의 수도공사비가 소요된 수요자는 기본 정액공사비 29만원과 공사비의 1.5배인 43만 5,000원의 초과분, 1만 5,000원을 합한 30만 5,000원을 내야하고, 10평 미만의 서민주택은 공사비 29만원의 30%를 감면하고 6개월 분납제를 실시하여, 서민부담 감소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시설비 정액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당시 소위 특선을 끌어준다고 터무니 없는 공사비를 요구한 부실업

자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시에서는 예상되는 고정수입원 확보가 분명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나,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거나, 간선 배수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정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시설비를 내야하고, 간선 배수관에서 먼 거리에 있거나, 포장도로변에 있는 가정은 종전보다 싼 값으로 수도공사를한다 해서,

.....  
油印物 5페이지와 같은 實施 告示를 81年 8月 10日 朴英秀 市長이 해서 이 條項은 그대로 施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油印物 6페이지 서울特別市 告示 第65號로 85年 1月 28日 두번째 告示가 있습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給水工事 定額工事費와 定額給水工事 實施地域을 告示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油印物 7페이지

.....  
(3) 제8조 제2항 중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을 제외 한 증축면적이 165m<sup>2</sup>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구경확대 공사를 제외한다” 삭제한다는 개정안은

i) 급수조례 제8조②항의 실제 소요공사비의 적용공사의 예외규정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은 제외한 증축 연면적의 165m<sup>2</sup> 이상인 건물의 구경확대 공사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서 구경확대 경우, 건물의 규모에 따라, 증축면적이 적은 경우는 실제 소요 공사비를 증축면적이 큰 건물은 정액공사비로 이원화 적용되고 있으며,

ii) 구경확대 공사비가 실제공사비와 정액공사비로 운영을 하다보니, 그간 정액급수 공사비는 81.8월이 정액공사비 실시이후, 13년동안 한번도 공사비를

<p>조정하지 못 하여 세대당 공사비 (290,000)가 변함이 없으나,                  iii) 실제공사비는 그 동안 계속된 인건비 및 자재인상등으로 계속 공사비가 상승(가구당 40~50만원)하여                  iv) 당초 정액공사비의 취지인 건물 규모에 적정토록 공사비를 부과한다는 정액공사비의 취지에 어긋나는 큰 건물의 부담이 적게 되는 역현상이 발생</p>	<p>하고 있는바,                  v) 이를 정액공사비로 일원화하여, 현행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vi) 개선시, 지금까지 실제공사비로 많이 부담하던 증축면적이 165m<sup>2</sup>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p>
--	--

예) 동대문구 전농동 20번지 이정숙의 구경 확대 급수공사(D=20mm, L=4m)비교

구 분	실제소요공사비	정액공사비 부과시	비 고
계	338,280	290,000	건축면적 : 147.75m <sup>2</sup>
공 사 비	314,830	290,000	기존건축면적제의
도 로 복 구 비	23,350		
	+43,280	-	

(4) 동조제2항내지 제6항을 제3항내지 제7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②“건물 증축에 따른 급수관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면적을 제외한 증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적용한다”라는 개정안은

i) 위2항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구경확대의 경우, 이원화 되어있는 공사비적용제도를 정액공사비로 일원화 하기위한 것이며,

(5) 제10조 제목 중 “정액제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하고, “시장이 고시한다”를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은

i) 급수조례 제10조(정액제공사비 및 실시지역의 고시)에 의하면, “제8조(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시장이 고시한다”로 되어 있음.

ii) 제목 중 “정액제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조정하여 용어통일.

iii)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시장이 결정 고

시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시장이 고시한다”로 되어 있어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결정고시한다”로 개정하므로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임.

라. 종합검토의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鍾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炯奎委員님.

○金炯奎委員 金炯奎委員입니다.

本部長께서 말이죠, 基本的으로 上水道事業本部는 그 收益의 주체가 水道料金에 의한 收入이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돗물을 給水하는 送水管, 配水管, 또는 給